

# 대한장연구학회 다기관연구 제안 및 심의 규정

## 제 1조(명칭)

“대한장연구학회 다기관연구 제안 및 심의규정”이라고 한다.

## 제 2조(목적)

대한장연구학회 다기관 연구 참여를 독려하고 연구 진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기관연구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최대한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

## 제 3조 (연구제안자의 자격)

대한장연구학회의 평생회원으로 한다.

## 제 4조 (연구제안의 방법)

연구의 제안은 온라인제안을 원칙으로 하고, 연 2회 정기 공모를 하며, 상시 제안도 가능하도록 한다.

## 제 5조 (연구제안서 제출방법과 연구제안 양식)

대한장연구학회 홈페이지(<http://www.gut.or.kr/main/main.html>) 다기관연구란의 연구 제안 항목에 각 연구회 이름으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파일을 업로드한다.

## 제 6조 (심사위원회)

제안된 연구안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심사위원회는 각 연구회의 위원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7조 (심사방법)

1. 제안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A. 연구의 의의(필요성), B. 연구의 독창성, C. 연구의 실현가능성, D. 연구의 비용-효과의 효율성, E. 연구계획서의 충실성
  - 위 평가항목 이외에 진행중인 공동연구와의 중복 여부와 개별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
2. 각 연구회의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된 연구의 통과, 반려, 수정을 결정한다.

## 제 8조 (저자됨)

1. 주저자는 (공동)제1저자와 (공동)교신저자를 의미한다.
2. 주저자는 기본적으로 4명을 권장하며, 연구 제안자에게 1/2, 그리고 연구 제안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자료(증례)를 제공한 2명의 공동연구자에게 1/2을 부여한다. 단, 주저자를 3명만 인정해주는 저널인 경우에는 연구 제안자에게 2명, 연구 제안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자료(증례)를 제공한 공동연구자에게 1명을 부여한다.
3. 주저자 중 교신저자 혹은 제1저자의 선택 및 배분은 연구 제안자와 심사위원회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4. 연구 제안자는 최소 참여 범위 (예, 기관당 00증례 이상, 또는 연구자당 00 증례 이상)를 제시하여, 최소 참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공동저자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